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4. 10. 21.

사건번호 2014년 형제45888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정진우 (인)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000 ()

직업 ()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공직선거법위반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II.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http://twitter.com@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4. 22. 자신의 트위터 계정(twitter.com@)에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사퇴하길. 7선했음 됐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4. 4. 23. 같은 방법으로 “몽심지심.....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새민련 야당은 새누리에 정몽준 후보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4. 5. 9. 23:35경 같은 방법으로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ㅋㅋㅋ몽가루 집안이라ㅋㅋㅋㅋ 온가족이 정몽준안티라고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몽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비방하였다.